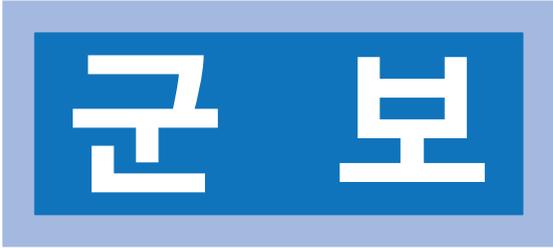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정기 제509호 2023. 5. 15. (월)

입법예고

장수군 공고 제2023-627호
장수군 공고 제2023-640호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4

공 고

장수군 공고 제2023-646호

장수군 공인 등록(폐기) 공고..... 19

회 람									
--------	--	--	--	--	--	--	--	--	--

장수군 공고 제2023-627호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 조기 출산으로 인한 전출입 가정, 해외 출산 시 출산장려금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저출산 시대에 맞는 첫째아, 둘째아 출산 가정에 지원을 확대하고 다섯째 이상 출산 가정은 넷째아 이상으로 통합하여 실질적인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의 범위 신설

-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

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출생신고 된 날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한다.(안 제 3조의 제3항 제4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부 또는 모의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할 시 지원할 수 있다.(안 제 3조의 제3항 제5호)

가. 입국 이후 군에 거주하며, 군에서 자녀를 출생 신고한 경우

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나.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 수정(안 제4조 제1항)

- 별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구 분	지원금(원)	지급방법		비고
		일시금	분할금	
첫째	5,000,000	2,000,000원 일시금 지급	3,000,000원 15개월 분할 지급 (20만원*15개월)	
둘째	7,000,000	3,000,000원 일시금 지급	4,000,000원 20개월 분할 지급 (20만원*20개월)	
셋째	10,000,000	4,000,000원 일시금 지급	6,000,000원 30개월 분할 지급 (20만원*30개월)	
넷째 이상	12,000,000	4,000,000원 일시금 지급	8,000,000원 40개월 분할 지급 (20만원*40개월)	

다.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신설

-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은 진단서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단,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는 중복지급이 불가하다.(안 제4조 제4항)

라. 별지 제1호서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 2023. 4월 중
- 입법예고 : 2023. 5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3. 5월 중
- 의회 안건 제출 : 2023. 5월 중
- 공포 및 시행 : 2023. 7월 중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별지 제1호서식 1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제3조제3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출생신고 된 날부터 군에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할 시 지원할 수 있다.

가. 입국 이후 군에 거주하며, 군에서 자녀를 출생 신고한 경우
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은 진단서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단,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는 중복지급이 불가하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출산장려금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지원금(원)	지급 방법		비고
		일시금	분할금	
첫째	5,000,000	2,000,000원 일시금 지급	3,000,000원 15개월 분할 지급 (20만원*15개월)	
둘째	7,000,000	3,000,000원 일시금 지급	4,000,000원 20개월 분할 지급 (20만원*20개월)	
셋째	10,000,000	4,000,000원 일시금 지급	6,000,000원 30개월 분할 지급 (20만원*30개월)	
넷째 이상	12,000,000	4,000,000원 일시금 지급	8,000,000원 40개월 분할 지급 (20만원*40개월)	

<지급시기>

1. 일시금 지급시기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2. 분할금 지급시기 : 일시금 지급 다음 달부터 기간 동안 매월 15일까지

(3쪽 중 2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출산 가구 전기료 감감과 다자녀 전기료 감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감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공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 제공하는 각종 감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센터,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 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감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감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8.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칭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초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0. 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부모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1.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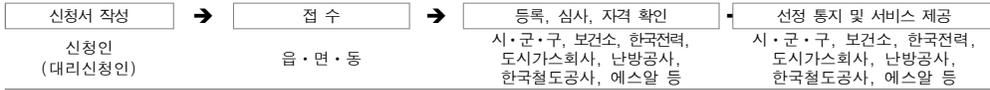
(3쪽 중 3쪽)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후단 신설></p> <p>1. ~ 3.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일 당시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출생신고된 날부터 군에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u></p> <p>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p>

<p>제4조(지원 기준 등) ① ~ ③ (생략) <u><신 설></u></p>	<p><u>다만,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할 시 지원할 수 있다.</u> <u>가. 입국 이후 군에 거주하며, 군에서 자녀를 출생 신고한 경우</u> <u>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u> 제4조(지원 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은 진단서를 확인하여 지급한다.</u> <u>단,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는 중복지급이 불가하다.</u></p>
--	--

[별표] <현행>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지원금(원)	지급방법	지 급 시 기	비고
첫째	3,000,000	1,000,000원 일시금 지급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2,000,000원 10개월 분할 지급	일시금 지급 다음 달부터 기간 동안 매월 15일까지	
둘째	5,000,000	2,000,000원 일시금 지급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3,000,000원 15개월 분할 지급	일시금 지급 다음 달부터 기간 동안 매월 15일까지	
셋째	10,000,000	4,000,000원 일시금 지급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6,000,000원 30개월 분할 지급	일시금 지급 다음 달부터 기간 동안 매월 15일까지	
넷째	12,000,000	4,000,000원 일시금 지급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8,000,000원 40개월 분할 지급	일시금 지급 다음 달부터 기간 동안 매월 15일까지	
다섯째 이상	15,000,000	5,000,000원 일시불 지급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10,000,000원 50개월 분할 지급	일시금 지급 다음 달부터 기간 동안 매월 15일까지	

[별표]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지원금(원)	지급방법		비고
		일시금	분할금	
첫째	5,000,000	2,000,000원 일시금 지급	3,000,000원 15개월 분할 지급 (20만원*15개월)	
둘째	7,000,000	3,000,000원 일시금 지급	4,000,000원 20개월 분할 지급 (20만원*20개월)	
셋째	10,000,000	4,000,000원 일시금 지급	6,000,000원 30개월 분할 지급 (20만원*30개월)	
넷째 이상	12,000,000	4,000,000원 일시금 지급	8,000,000원 40개월 분할 지급 (20만원*40개월)	

<지급시기>

1. 일시금 지급시기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2. 분할금 지급시기 : 일시금 지급 다음 달부터 기간 동안 매월 15일까지

장수군 공고 제2023-640호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장 수 군 수

1. 제정이유

「행정기본법」·「민법」 개정으로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을 확립하는 만 나이 통일법(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 5.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보건사업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 1) 주소 : (우 55631)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47,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2) 전화번호(팩스) : 063-350-2642(063-351-5010)
 - 3) 전자우편(이메일) : hn4270@korea.kr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063-350-26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나.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기호(□) 중 “만19세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p> <p>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성공 지원금을 지급한다.</p> <p>다만,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 또는 재등록 당시 만 19세 이상일 것 2. 등록 또는 재등록한 날부터 금연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소를 둘 것 3. 12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할 것 4. 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한다. 		<p>[별표 1]</p> <p>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성공 지원금을 지급한다.</p> <p>다만,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 또는 재등록 당시 19세 이상일 것 2. 등록 또는 재등록한 날부터 금연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소를 둘 것 3. 12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할 것 4. 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한다. 																																																																										
<p>[별지 제2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th> <th>등록일</th> <th>년</th> <th>월</th> <th>일</th> <th>금연성공 기준일</th> <th>년</th> <th>월</th> <th>일</th> </tr> </thead> <tbody> <tr> <td>확인</td> <td>금연기간</td> <td><input type="checkbox"/>12개월</td> <td><input type="checkbox"/>18개월</td> <td><input type="checkbox"/>24개월</td> <td>금연 검사 결과</td> <td><input type="checkbox"/>성공</td> <td><input type="checkbox"/>실패</td> <td></td> </tr> <tr> <td>사항</td> <td>연령기준</td> <td colspan="3"><input type="checkbox"/>만19세이상</td> <td>관내 계속 주소</td> <td><input type="checkbox"/>충족</td> <td><input type="checkbox"/>미충족</td> <td></td> </tr> <tr> <td></td> <td>지급액</td> <td colspan="3"><input type="checkbox"/>20만원</td> <td><input type="checkbox"/>50만원</td> <td><input type="checkbox"/>80만원</td> <td></td> <td></td> </tr> </tbody> </table>			등록일	년	월	일	금연성공 기준일	년	월	일	확인	금연기간	<input type="checkbox"/> 12개월	<input type="checkbox"/> 18개월	<input type="checkbox"/> 24개월	금연 검사 결과	<input type="checkbox"/> 성공	<input type="checkbox"/> 실패		사항	연령기준	<input type="checkbox"/> 만19세이상			관내 계속 주소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지급액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50만원	<input type="checkbox"/> 80만원			<p>[별지 제2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th> <th>등록일</th> <th>년</th> <th>월</th> <th>일</th> <th>금연성공 기준일</th> <th>년</th> <th>월</th> <th>일</th> </tr> </thead> <tbody> <tr> <td>확인</td> <td>금연기간</td> <td><input type="checkbox"/>12개월</td> <td><input type="checkbox"/>18개월</td> <td><input type="checkbox"/>24개월</td> <td>금연 검사 결과</td> <td><input type="checkbox"/>성공</td> <td><input type="checkbox"/>실패</td> <td></td> </tr> <tr> <td>사항</td> <td>연령기준</td> <td colspan="3"><input type="checkbox"/>19세 이상</td> <td>관내 계속 주소</td> <td><input type="checkbox"/>충족</td> <td><input type="checkbox"/>미충족</td> <td></td> </tr> <tr> <td></td> <td>지급액</td> <td colspan="3"><input type="checkbox"/>20만원</td> <td><input type="checkbox"/>50만원</td> <td><input type="checkbox"/>80만원</td> <td></td> <td></td> </tr> </tbody> </table>				등록일	년	월	일	금연성공 기준일	년	월	일	확인	금연기간	<input type="checkbox"/> 12개월	<input type="checkbox"/> 18개월	<input type="checkbox"/> 24개월	금연 검사 결과	<input type="checkbox"/> 성공	<input type="checkbox"/> 실패		사항	연령기준	<input type="checkbox"/> 19세 이상			관내 계속 주소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지급액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50만원	<input type="checkbox"/> 80만원		
	등록일	년	월	일	금연성공 기준일	년	월	일																																																																				
확인	금연기간	<input type="checkbox"/> 12개월	<input type="checkbox"/> 18개월	<input type="checkbox"/> 24개월	금연 검사 결과	<input type="checkbox"/> 성공	<input type="checkbox"/> 실패																																																																					
사항	연령기준	<input type="checkbox"/> 만19세이상			관내 계속 주소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지급액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50만원	<input type="checkbox"/> 80만원																																																																						
	등록일	년	월	일	금연성공 기준일	년	월	일																																																																				
확인	금연기간	<input type="checkbox"/> 12개월	<input type="checkbox"/> 18개월	<input type="checkbox"/> 24개월	금연 검사 결과	<input type="checkbox"/> 성공	<input type="checkbox"/> 실패																																																																					
사항	연령기준	<input type="checkbox"/> 19세 이상			관내 계속 주소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지급액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50만원	<input type="checkbox"/> 80만원																																																																						

장수군 공고 제2023-646호

장수군 공인 등록(폐기) 공고

장수군 공인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공인등록(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장 수 군 수

- 1. 등록(폐기) 사유
 - 장수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 사무처리지침 시행
- 2. 폐기년월일: 2023. 5. 10.
- 3.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공 인 명	규격 및 서체	인 영
폐기	장수군 장수읍 농지관리위원장인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장수군수의인 (장수읍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산서면장의인 (장수읍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번암면장의인 (장수읍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장계면장의인 (장수읍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천천면장의인 (장수읍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계남면장의인 (장수읍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계북면장의인 (장수읍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장수군 산서면 농지관리위원장인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장수군수의인 (산서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장수읍장의인 (산서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변암면장의인 (산서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장계면장의인 (산서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천천면장의인 (산서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계남면장의인 (산서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계북면장의인 (산서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장수군 변암면 농지관리위원장인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장수군수의인 (변암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장수읍장의인 (번암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산서면장의인 (번암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장계면장의인 (번암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천천면장의인 (번암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계남면장의인 (번암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계북면장의인 (번암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새마을지도자 번암면 협의회장인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장수군 장계면 농지관리위원장인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장수군수의인 (장계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장수읍장의인 (장계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산서면장의인 (장계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번암면장의인 (장계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천천면장의인 (장계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계남면장의인 (장계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계북면장의인 (장계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장수군 천천면 농지관리위원장인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장수군수의인 (천천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장수읍장의인 (천천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산서면장의인 (천천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번암면장의인 (천천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장계면장의인 (천천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계남면장의인 (천천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계북면장의인 (천천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장수군수의인 (계남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장수읍장의인 (계남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산서면장의인 (계남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번암면장의인 (계남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장계면장의인 (계남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천천면장의인 (계남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계북면장의인 (계남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장수군 계북면 농지관리위원장인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장수군수의인 (계북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장수읍장의인 (계북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산서면장의인 (계북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번암면장의인 (계북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장계면장의인 (계북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천천면장의인 (계북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폐기	계남면장의인 (계북면중계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군보발행안내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계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계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계재 의뢰 방법 : 계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